

## 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구 분           | 연 도 별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| 2014  | 2015  | 2016  | 2017  | 2018   |
| 지방채발행한도액(A)   | 7,900 | 8,100 | 8,200 | 8,300 | 10,300 |
| 발행액(B)   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 |
| 발행비율(B/A*100)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 |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 - \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  - \*\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'공공 및 기타대출'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- ※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(A)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'기본한도액'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'별도한도액'을 더한 금액을 기재